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 지원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07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 지원(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br>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29.

다. 회 부 일 : 2025. 7.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 지원(안 제4조의4 등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가 공연장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 취약계층이 현장판매나 전화예매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u>제4조의4(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을 위한 지원) ①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노인, 장애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이하 “디지털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u> |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극장 등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예술 참여 증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 관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 및 공연장 입장권등 구입에 관한 조치 내용,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                                                       |                                                   |
|-------------------------------------------------------|---------------------------------------------------|
|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br>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br>할 수 있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br>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br>같음)                         |
| 1. ~ 6. (생략)                                          | ③ -----<br>-----<br>-----.                        |
|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
| ④·⑤ (생략)                                              | 7.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br>을 따르지 아니한 자<br>④·⑤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의, 디지털 역량 강화, 접근성 보장 및 대체 수단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sup>1)</sup>. 특히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

1) 「디지털포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통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입장권과 관련하여 압표 거래 등 부정판매 금지를 규율하고 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예매 접근성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sup>2)</sup>.
- 한편, 현재 공연 예매 환경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인기 공연의 경우 선예매 또는 특정 플랫폼 독점 예매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예매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 관람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가 문화 향유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판매 시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에게 현장판매·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용법」의 기본 취지와도 닿아있으며 공연 시장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적용 예외를 매출 규모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출 규모는 좌석 수와 티켓 가격에 의해 단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공연장의 실제 특성과 관객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소규모 좌석을 보유하면서 고가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장의 경우, 실제 좌석 수가 적어 취약계층 배정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대규모 공연이라 하더라도 저가 티켓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공연이 매진되더라도 총매출이 크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예매 경쟁률은 높아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공연 접근권 보장에 있는 만큼,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공연 성격, 좌석 규모, 티켓 가격, 예매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판매 및 전화예매에 관한 사항은 ①의무 부과 대상이 공연기획·제작사, 대관 극장, 판매 대행사 등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인지 불분명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고, ②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규정하게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기초공연예술 단체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에 대해서는 전화응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384 |
|--------------|